

日本의 石油產業 구조개편과 政策方向

이 자료는 日本通產省의 자문기관인 石油審議會 石油部會의 소위원회가 지난 1981년 7월 이후 3년간에 걸쳐 日本 석유산업의 구조개편방향과 중장기적인 石油政策의 전개방향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종합한 최종 보고서이다(編輯者註)。

I. 머리말

本小委員會는 81년 7월, 제 2차 석유파동 후 경영위기에 직면한 日本石油產業의 긴급대책 및 중장기 구조개선 대책의 방향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 위해 石油審議會 石油部會 밑에 구성되어 심의를 개시했다.

본 소위원회는 그후, 81년 8월에 당면한 긴급대책을 마련한 후 이 경영위기가 본질적으로는 경영환경의 구조변화, 석유산업의 과열경쟁체질등 구조적인 석유산업정책의 전개방향에 대해 지금까지 정력적으로 검토해 왔다.

우선 81년 12월 「금후 石油產業의 方向에 대서」라는 제목으로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 보고서에서 주로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과잉설비의 처리, 판매회사의 집약화, 中間溜分의 안정공급 확보, 換差리스크 대책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또, 83년 5월에는 「石油產業 構造改善의 현상과 금후의 方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과잉설비의 처리, 설비의 고도화등을 중심으로 구조개선의 현상을 밝히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서 본소위원회는 販売会社의 집약화를 중심으로 石油產業의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石油業法 등 앞으로의 석유산업정책의 방향에 대해 검토해 왔다. 이 동안에 欧美 석유산업조사단 및 석유유통 조사단을 파견하여, 유럽과 美国의 석유산업의 구조개선과 석유정책의 방향을 파악하고, 綜合에너지 조사회에서는 에너지政策의 방향설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日本 석유산업은 과잉설비처리 등을 실시하고 최근에는 마침내 집약화를 향한 자주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으나, 石油產業은 여전히 심각한 경영환경하에서 스스로 과열경쟁체질을 탈피하지 못한채 경영체질의 약화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소위원회는 이와 같은 정세를 감안하여 집중적으로 심의한 끝에 금년 2월에는 중요당면과제인 판매회사의 집약화에 대해 중간보고를 한 바 있다.

이에 이은 본 보고서는 石油產業의 구조개선 방향과 중장기적인 石油產業政策의 전개방향에 대한 81년 이후의 심의 성과를 종합한 것으로서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석유산업의 구조개선 노력과 石油產業政策의 전개에 의해 국민경제의 기초자원인 석유의 안정공급 기반이 확립될 것을 기대한다.

II. 安定供給 기반의 구축

1. 최근의 석유산업 정세와 대응 방향

국제석유정세를 살펴보면, 세계적인 석유수요의 감소를 배경으로 작년 3월 OPEC臨時總會에서 기준원유 가격을 배럴당 5달러 인하했으나, 앞으로도 세계경기의 회복에 따른 石油需要의 회복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OPEC등의 공급여력을 고려하면 석유가격은 당분간 소강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제적인 石油需給은 팍박화될 경향이 짙으며, 또 석유가격의 동향은 상승세에 있다고 전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이란·이라크 분쟁의 긴박화 등 여전히 불안정한 中東정세를 감안하면 국제석유정세는 더욱 유동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된다.

日本의 석유제품 수요는 79년도 이후 매년 감소해 왔으나, 83년도에 접어들어 혹한 등 일시적인 요인도 있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 그러나, 작년 11월에 개정된 綜合에너지 조사회의 장기에너지 수급전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앞으로도 石油는 에너지의 大宗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보아 수요는 약간 증가하는 정도밖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수요구조의 輕質化가 확실히 진전되고 基礎素材產業을 중심으로 한 코스트 절감요청이 강력히 대두되는 등 日本의 석유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石油產業의 경영동향을 살펴보면, 81년도에 대폭 적자를 본 후, 82년도에는 하반기에 円貨강세도 있어 이익을 보았다. 그러나, 83년도 상반기에는 原油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가운데 과열경쟁체질 때문에 다시 적자를 보았으며, 그후 하반기에는 수익구조 기미가 보였으나, 기본적인 수익구조가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전히 경영체질의 약화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특약점 이하의 유통단계에서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작년 8월에 마련된 종합에너지 조사회의 「長期에너지 需給展望과 에너지政策의 총점검」이라는 보고에서 앞으로의 에너지政策의 방향으로서 석유비축, 석유 자주개발의 추진 등을 포함한 안정

성의 확보와 더불어 시대적인 요청인 에너지 코스트의 절감과의 균형확보를 배려하고 가능한 한 市場메커니즘을 활용해야 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또, 에너지의 양적인 면에서나 가격적인 면에서 공급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産業의 역할의 중요성 및 그 건전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으며, 石油産業에 대해서는 석유제품수급의 동향 등에 적절히 대응한 구조개선의 추진등 경영기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작년에 파견된 歐美 석유산업조사단 및 석유유통 조사단의 報告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日本의 경우처럼 석유제품수요의 현저한 감소, 경영악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유럽과 美國의 석유산업은 원유조달에서 소비시장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단호한 합리화 대책을 추진하고,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과감히 전개하고 있다. 또 메이저들은 이러한 合理化 대책과 병행하여 텁광개발을 중시하는 전략을 전개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석유기업의 주식가격이 자산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신규 油田개발의 채산성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레이건 정부하에서 독점 금지법의 운용상 탄력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의 정세를 배경으로 기업매수에 의한 재편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다.

日本 석유산업이 주요한 에너지源인 석유의 안정공급 담당자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歐美 석유산업의 동향을 고려하면서 석유의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스스로 구조개선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석유공급 시스템 전체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꾀하면서 과열경쟁체질을 시정하여 자율적인 생산질서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실시해온 과잉설비처리와 함께 설비구조의 고도화, 판매회사의 집약화, 換差리스크 대책 등을 확실히 추진하고 적정한 상거래질서의 형성, 유통구조개선의 추진, 공급원의 다각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 정제, 판매, 유통에 이르기까지 업계전체가 종합적으로 구조개선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石油産業의 構造改編의 진전과 과제

(1) 설비면에서의 대응

① 과잉설비 처리

파이프라인은 자율적인 질서에서 석유제품 공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불가결한 것이며, 石油企業이 조속히 자주적으로 이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本小委員會는 81년 12월 보고에서 제언한 바 있다.

그후, 83년 5월에 보고한 바와 같이, 各精油會社는 총 97만 배럴의 설비처리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작년 9월까지 그 처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82~86년도 석유공급계획에 책정된 하루 100만 배럴의 처리목표량은 대략 달성됐다. 앞으로는 판매회사의 집약화 등을 통해 석유공급 시스템의 전반적인合理化 및 效率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각社가 최적조업 체제를 확립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2) 設備高度化

최근의 석유제품 수요구조가 확실히 輕質化되어 가는 것에 대응하고, 석유제품 전체의 안정공급을 꾀해 가기 위해서 本小委員會는 2차설비를 적극적으로 확충·강화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2차설비의 확충·강화는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석유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보아 생산유종의 高附加價值에 의한 경영체질 개선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상대적으로 값싼 重質原油의 이용, 에너지 코스트 절감요청 등에 대응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며, 석유기업이 市場메커니즘에 입각한 석유제품 가격체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82년도에는 석유기업의 자주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重質油 分解施設 등을 대상으로 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등 투자촉진 稅制의 창설, 재정용자 제도의 확충등 정책적인 지원조치가 강화되었으나, 앞으로 이들 조치를 바탕으로 83년 5월 보고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석유기업의 설비구조 고도화가 확실히 진전될 것을 기대한다.

(2) 販賣회사의 集約化

84년 2월 중간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石油의 안정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석유공급 시스템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販賣 회사의 집약화를 통해 개별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原油조달에서 생산·유통단계까지의 석유공급 시스템 전체의 합리화 및 효율화와 자율적인 산업질서의 형성을 꾀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판매회사

의 집약화는 石油產業의 구조개선 대책의 기본이 되는 것이며, 최근에 와서 합병·업무 제휴 등을 통한 石油企業의 집약화를 향한 자주적 대응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이 중간보고서에서도 제언한 바와 같이, 적절한 정책적 유도조치하에 확실히 실효성 있게 결실을 맺도록 石油企業의 노력이 더욱 요청된다. 또, 행정적인 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적정하면서도 유효한 경쟁이 유지되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流通·販賣面의 대응

① 적정한 거래관행의 형성

심각한 경영환경 속에서 과열경쟁체질과 불합리한 거래관행 하에 石油產業의 경영체질의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本小委員會는 81년 12월의 보고에서 상품 인도전에 가격을 결정하는 거래관행의 확립 등, 거래관행의 합리화에 대해 지적하고, 금년 2월의 중간보고서에서 集約化의 추진과 더불어 합리적인 상거래관행의 확립 등 공정경쟁 규칙의 확립에 대해 제언했다.

앞으로는 이를바 사후조정 폐지를 정착시키고, 공정경쟁 규칙의 확립을 위해 中小企業團體法 등 관련법규를 활용하면서 판매, 유통업계가 제각기의 책임과 시장에 대한 자각하에 자주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적정한 거래관행의 형성을 꾀해갈 것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流通構造 개선의 추진

石油產業에 있어서 자율적 산업질서의 형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挿發油 판매업도 과열경쟁 체질의 시정을 꾀하고 자율적·효율적으로 안정된流通業의 확립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에 파견된 歐美 석유유통조사단의 보고서에서 지적된 歐美 석유유통업의 철저한 합리화, 다각화, 집약화 등의 대응을 본받아 日本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이 요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소기업적인 성격이 큰 휘발유 판매업의 경영기반의 강화에 대한 요청을 발판으로 삼아 앞에서 지적한 적정한 거래관행의 확립과 더불어 경영의 효율화, 다각화, 원활한 集約화의 추진 등, 구조개선의 구체

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로 돼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개선은 휘발유판매업계의 자각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때 판매기업과 휘발유 판매업자와의 거래관계의 실태를 감안, 販売企業의 자각과 협력이 불가결하다. 현재, 관계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들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속히 여론을 형성 그 구체화를 피할 필요가 있다.

(4) 其 他

① 換差리스크 対策

변동 환율제하에서 부단히 예상되는 外換時勢의 변동에 대해 石油產業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무 구조의 강화와 더불어 換差리스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소위원회는 81년 12월 보고에서 換 예약의 활용, 수입금융의 円金융화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그후의 추이를 살펴보면, 석유기업의 換 예약 비율은 착실히 상승하여 30% 정도가 되었으며, 또 수입금융의 円金융화의 전전이 엿보이는 등 換差리스크 대책은 점차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밖에 外貨 베이스거래 등 회계기준에 대해서는 84년 2월에 취득시 환율법의 채용이 인정되고, 또 환예약에 있어서의 실수요 원칙은 84년 4월에 폐지되었다. 아울러 円金융화를 추진할 때, 필요한 円화자금 확보를 위해 円화베이스 B/A 시장의 창설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그 성과가 기대된다. 여하튼 石油產業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계속 착실히 換差리스크 対策을 강구하는 것이 긴요하며, 석유기업 및 관계자의 노력이 더욱 기대된다.

② 供給源의 다변화

日本은 원유수입 공급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中東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거듭해 왔으나, 여전히 그 의존도는 약 70%로 歐美 주요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도 石油의 안정공급을 확보해가기 위해서 供給源의 다변화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방책을 계속 검토해 갈 필요가 있다. 또, 안정 공급원인 자주 개발 원유에 대해서는 원유공급 지역의 분산화를 구체적으로 피할 수 있는 잇점을

활용하여 中東지역 이외에서의 자주개발을 중요시하고 착실히 개발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이때 개발원유의 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발부문과 경제부문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III. 中長期的인 石油產業政策의 전개방향

1. 기본방향

日本 경제사회의 기초자원인 石油製品의 안정공급을 확보해 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주적인 대응하에 앞장에서 지적한 構造改編對策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석유공급 시스템의 중심인 판매기업의 集約化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석유공급 시스템 전체의 합리화 및 효율화와 자율적인 산업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과제이며, 집약화를 향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그러나, 석유제품은 다른 제품에서 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또, 日本 石油產業도 다른 산업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지 시장 매커니즘에 맡겨서 공급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곤란하다.

즉, 석유제품은 각 제품 수급의 균형유지는 연산품이라는 성격때문에 제약이 있으며, 각 제품 모두 이를 바 제품 차별성이 없고, 단지 가격면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고, 또 국제정치적인 상품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불안정한 점이 많으며, 原油조달, 換率 등 코스트面에서의 타율성이 강하고, 변동폭도 크다는 등의 특성이 있다.

또, 日本 石油產業의 특질로서, 도매에서 일반 소비시장에 이르기까지 시장 규모에 비해 기업수가 많다는 점과 자본관계가 다양하다는 점, 개발부문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또 中東의존도가 높다는 점 때문에 공급기반이 취약하다는 점, 석유비축법에 의거 90일간 비축의무에 따른 자금부담, 석유관계諸稅에 의한 거액의 세금부담 등을 안고 있으므로 해서 경영이 압박받는 면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石油製品의 공급안정을 확보해 가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輕質化的 진전 등 수요구조의 변화와 수요변동에 적합히 대응한 공급의 확보, 코스트 절감 요청에 대응한合理화 및 효율화의 추진, 과당 경쟁체질의 배제 등에 의한 안정적·효율적인 공급기반의 확립, ② 넓은 의미에서의 안정공급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업자의 적격성의 확보와 공급원의 다각화 등에 의한 경제안전 보장의 확보, ③ IEA의 상호 융통시스템에 대한 협력, 질서있는 수입의 확보 등에 의한 국제적인 합의의 이행, ④ 긴급한 상황에 대응한 적절한 수급·가격·수출입의 관리 등에 의한 危機管理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등의 행정조치가 있다.

따라서 石油產業政策의 기본방향으로서는 81년 2월 報告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행정요청에 적절히 대처하고 석유의 안정공급을 폐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입은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적극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민간의活力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정공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적인 개입은 점진적으로 축소·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 긴급시에 대응한 위기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원활하면서도 기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적절한 対應策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체계를 구축해 갈 것이 요청된다.

2. 消費地精製方式의 기본정책

(1) 日本의 석유제품무역의 동향과 환경

① 석유제품수출입의 현상

日本의 석유제품수입은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歐美제국에 비해 양적으로나 内需에서 차지하는 비중면에서 그다지 큰 격차는 없다.

石油製品輸入을 유종별로 보면 나프타와 重油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重油는 72년 이후 관세 할당 제도하에서 수입이 이루어졌으며, 나프타는 82년에 석유화학원료용에 대해 실질적인 수입자유화가 실시되고 있다. 또, 그밖의 유종도 기후등에 따른 수요변동에 즉시 대응해 석유제품의 수급안정 확보를 꾀한다는 관점에서 수시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석유제품 수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석유제품수출은 그 대부분이 B-C油, 제트연료유 등의 보세수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수출은 제1차 석유파동 이후 국제적인 석유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승인 제도 대상으로 지정하고 신중히 대응해 왔다. 최근에 와서 B-C neck의 해소, 脫黃장치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이 실시되는 등, 어느 정도 탄력적인 운용이 엿보이며, 석유제품수출은 예외적으로 실시하는데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② 石油製品輸入의 환경

세계의 石油貿易은 原油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최근 製品去來는 石油貿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적고 공급원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상이다. 앞으로 산유국이 하류부문으로 진출함에 따라 日本에 대한 제품수입 압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상황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製品貿易의 동향을 유종별로 살펴보면, 나프타와 重油가 세계적으로도 大宗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품무역의 중심을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重油는 세계적인 2차설비의 도입을 배경으로 분해용 重油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휘발유와 중간유분은 공급력과 제품규격 등의 면에서 안정적인 공급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로테르담, 카리브해 지역등 제품수출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歐美제국과 비교하면 日本의 석유제품 수입환경은 상당히 이질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③ 국제적인 石油製品 價格과 제품수입

석유제품은 연산품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각국의 제품가격체계는 유종별 수요구성, 에너지자원의 부존상황등의 차이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또, 수입석유제품은 국제적인 무역규모가 작고, 단기적인 수급변동에도 크게 영향받는 것 등 때문에 原油에 비해 가격변동폭이 큰 경향이 있다.

(2) 消費地精製方式의 기본방향

① 소비지정제 방식과 그 국제화의 의의

소비지정제 방식에 대해서는 81년 12월 보고에서 『연산품인 각종 石油製品의 장기안정공급과 국

제관리의 진전에 따른 질서있는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 운용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이며, 국내외의 제상황으로 보아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정비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적극 국제화의 방향을 겨냥해 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제상품인 石油化學製品의 코스트는 대부분이 원료인 나프타가 차지하고 있는 것 등 다른 油種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나프타 특유의 상황이나 조건을 고려해 82년 4월에 석유화학용 나프타의 실질적인 수입자유화가 예외적인 조치로서 실시되었다. 또, 83년 8월 綜合에너지 調査會의 보고서에서 『에너지 코스트의 상승이 기초 소재산업을 비롯해 日本 경제사회에 광범하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에너지코스트의 절감이 국민경제상 큰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정세를 고려하여 앞으로도 81년 12월 報告에서 밝힌 방침을 기본으로 하여 적극 國際化의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방침은 적극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民間活動을 존중한다는 석유산업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도 합치하는 것이다.

② 國際化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消費地精製方式의 국제화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석유제품무역, 제품가격체계 등의 특성, 歐美석유산업의 실정등을 감안,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석유제품무역은 原油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점과 공급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 그리고 가격변동이 크다는 점등 때문에 공급의 안정성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또 석유제품수입이 단기간에 대폭 증감하게 될 경우에는 연산품인 석유제품의 공급안정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각국간의 유종별 수요구성의 차이 등에 따라 석유제품가격 체계의 國際化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제외국에서는 石油製品의 수입에 대해 石油企業의 판단하에 국내경제와의 탄력적인 선택·조화를 추구하면서도 석유제품수입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국내의 공급안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수입질서가 확보되어 있다.

—판매회사의 集約化를 통한 자율적인 산업질서의 형성, 설비구조의 고도화등과 같은 기반정비 상황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국제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③ 앞으로의 方向

消費地精製方式의 앞으로의 방향은 적극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민간활동을 존중한다는 石油產業政策의 기본 방향하에 앞에서 언급한 모든 점을 고려하면서 國際化를 향한 프로그램에 관해 각계의 여론을 형성해 가야할 것이며, 우선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石油製品輸入의 점진적인 확대

석유제품수입에 대해서는 ▲세계의 석유제품무역 동향에서 본 공급안정성, ▲수요산업의 상황에서 본 국민경제상의 요청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 점진적으로 수입의 확대, 또는 가격변동폭을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 등에 의한 수요변동에 즉시 대응하고, 민생용 灯油의 공급을 확보하는 등 석유제품의 수급안정을 확보해 간다는 관점에서 앞으로도 수시로 소요제품수입을 기동적으로 실시하는등 탄력적인 대응을 꾀해야 할 것이다.

—石油製品輸出의 탄력화

석유제품수출에 대해서는 국제석유정세의 변동에 적극히 대응하고, 제품수입면에서의 國際화와 관련되는 점 등을 배려하면서 日本의 제품수급 균형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제품수출의 탄력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國際화에 당면한 정책적 기반의 구축

국제화를 꾀함에 있어서는 수입면에서 ▲연산품인 石油製品의 공급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광범위하게 관련된 각 석유제품의 소비자, 수요산업의 이익 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수입질서를 확보할 것, ▲유동적인 내외정세에 대응하고 넓은 의미에서의 공급책임하에 石油企業의 자주적인 판단에 의거 국내 경제와 제품수입의 탄력적인 선택·조화를 확보할 것, ▲위기 발생시에 적절한 위기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등을 가능케하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수출면에서의 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수출승인 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3. 石油業法의 기본방향

(1) 석유업법의 위치 설정

석유를 둘러싼 정세는 石油業法 제정시의 상황에 비해 크게 변했으며, 石油業法은 이러한 정세를 반영하여 최근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완화된 법규정 및 이를 배경으로 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법은 유동적인 정세속에서 변화하는 행정요구에 맞춰 기동적·탄력적인 대응책을 꾀할 수 있는 법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81년 12월의 보고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현재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石油業法의 주요규정에 입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석유공급 계획의 책정·석유제품생산계획의 신고·권고 규정에서는 輕質化의 진전등 수요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설비구조의 고도화, 과잉설비처리 및 소비지 경제방식의 국제화 방향설정, 연산품인 각종 석유제품의 수요변동에 적절히 대응해 공급확보를 꾀하는 기능.

—석유수입업의 신고·석유수출입계획 신고·권고 규정에서는 수입업자의 실태파악, 특정제품의 수입에 의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각종 石油製品의 공급안정의 교란방지등 앞에서 설명한 석유공급 계획의 방향설정에 입각한 적절한 수입 질서의 확보, IEA의 긴급용통시스템에 대한 협력, 질서있는 수입의 확보 등에 의한 국제적 합의의 이행 확보,供給源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기능.

—석유판매업의 신고규정은 복잡한 석유유통의 실태파악과 이에 의한 긴급시 대책의 실효성 확보, 판매회사의 집약화를 유도하는 기능.

—石油精製業의 허가·석유정제설비의 허가규정은 석유정제업의 신규참가, 상압증류장치의 신설과 연관돼 적용될 가능성은 적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공급안정책임을 이룩할 수 있는 사업자의 적격성의 확보, 前記한 석유공급계획의 방향설정에 입각한 설비구조의 고도화 및 과잉설비처리를 추진하는 기능.

이와 같이 현재의 石油業法은 석유공급 계획의 책정·석유제품 생산계획의 신고·권고등의 완화된

법규정을 중심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석유정제업의 허가, 석유정제설비의 허가등 경직된 규정을 포함해 石油業法 전체로는 적화한 운용이 확보되는 한 앞에서 지적한 행정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법체계가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石油業法의 완화된 법규정 및 이를 배경으로 한 행정지도는 석유정제업의 허가제 등의 규제에 의해 실효성의 확보가 기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앞으로의 方向

石油業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적극 시장메커니즘을 통하여 민간의 활동을 존중한다는 石油產業政策의 기본방향을 발판으로 삼아 유동적인 내외정세에 입각한 행정요청에 기동적,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이 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적화성 확보에 앞으로 더욱 베려할 것이 중요하다.

石油業法의 운용에 대해서는 81년 12월 보고에서 지적한 것을 토대로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왔으나, 앞으로도 자율적인 산업질서의 형성을 향해 더욱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설비허가와 관련한 규제를 더욱 간소화하고 각社의 생산계획에 대한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산업질서의 형성을 추진하고 소프트化를 철저히 겨냥하는 등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민간활동을 존중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각사의 생산계획이 판매동향에 즉응한 것이 되도록 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石油業法의 체계 및 운용과 관련하여 앞에서 지적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각계의 여론을 형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발생시에 危機管理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원활하면서도 기동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체계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石油業法의 현재의 범위, 운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이때 특히 준위기 발생시의 대응책을 강구한 다음 적절한 것인지 검토할 것.

—특히 수입면에서 석유업법 제정시에 비해 대폭 간소화된 무역관리제도하에서 消費地精製方式의 국제화, 국제적 합의의 이행 등의 관점에서 석유업법을 비롯한 현행 정책체계를 재 검토하고, 적절한 수입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4. 휘발유 판매업법의 운용방향

휘발유 판매업법은 등록제도를 중심으로 한 비교적 완화된 법체계하에 사업자의 적확한 수행능력의 확보, 품질의 확보 등, 휘발유의 공급안정 확보에 대해 상응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휘발유 판매업도 과열경쟁체질을 시정하고, 자율적·효율적으로 안정된 유통업의 확립을 겨냥하여 구조개선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조속히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휘발유판매업법 및 그 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나 효과를 포함해 폭넓은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IV. 맺는말

본 보고는 지금까지 대략 3년에 걸쳐 심의한 성과를 집약하고, 日本石油產業이 노력해야 할 구조개편의 방향과 중장기적인 石油產業政策의 전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日本 석유산업을 둘러싼 정세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으며, 석유산업정책의 전개방향에 대해서도 석유의 공급 안정과 코스트 절감과의 균형확보, 가능한 한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등이 요구되는 바 日本 석유산업은 지금 경영의 대변혁을 맞고 있다.

日本の石油産業은 최근 구조개편에 대해 자주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石油産業에 요구되는 과제의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 그 출발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자신을 둘러싼 어려운 정세를 직시하고, 日本의 에너지의大宗을 이루는 석유의 안정공급 담당자로서 국민경제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며, 석유공급시스템 전체의 합리화·효율화, 자율적인 산업질서의 형성을 향해 적극적으로 구조개편의 추진에 노력하고 석유의 공급안정 기반의 구축을 겨냥해 착실한 진전을 계속해 갈 것이 강력히 요구된다.

한편, 石油産業政策面에서도 앞으로 관계각계의 견해와 협력하에 폭넓게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노력하고 본 보고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을 적확하면서도 착실하게 전개해 갈 것이 요청된다.

石油를 둘러싼 문제는 광범하게 걸쳐 있으며, 本小委員會가 3년간에 걸쳐 심의한 것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국내외의 석유정세가 유동적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석유산업의 구조개선 노력과 석유산업정책의 전개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정세변화에 따른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간석유에너지정보〉



国内 唯一의 石油産業 海外弘報誌

The Petroleum Industry in Korea 1984

—大韓石油協會 弘報室—